

붙임 1)

##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단양관광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 소선암자연휴양림 식당(매점)을 사용·허가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한다.

**제2조(사용허가기간)** ①사용허가 기간은 2022년 월 일부터 2022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2년간의 임대기간 이후 허가조건과 특수조건을 충족했을 때는 1년의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간 사용료로 최초년도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둘째년도 이후 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의거 산정하여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에 전액 납부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1년 단위 최초 낙찰금액 납부, 총2년 2회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사용료는 공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를 납기 내 미납 시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허가를 취한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허가서 교부일까지 단양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사고발생시 피해인 1인당 금삼천만원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을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식품위생과 관련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계약(건물상당액 1억 4천)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 기간은 사용허가 기간과 동일해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사용허가와 동시에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사용자 성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전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재산훼손 시 필요한 보수를 사용인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①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식당(매점) 사용이 확정된 이후 사용기간 중 실내·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수거비 및 기타 비용을 사용인의 부담으로 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자체 처리하며, 식당 내부 및 주변을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공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 ①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 ②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 ③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①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 ②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 ③기타 공사에서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공사에서 허가재산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운영자 선정 시 까지 식당(매점)운영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공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사용재산의 원상복구를 공사가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 및 비품에 대하여는 일체 공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판매가격 및 종류)** ①사용인은 판매물품의 종류 및 금액 산정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사용인은 부정·불량식품(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허위표시 행위, 비위생적 판매행위 등), 기타 단양관광공사 사장이 판매금지 하는 품목으로 하며 공사 운영상 필요시 불가피 하게 판매 금지 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정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판매물품 준수사항** : 고객에게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위생법(법, 시행령,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법조항을 위배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판매물품은 보건위생 및 관광단지환경 조성 등을 고려하여 고객의 안전과 보건 위생에 적합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판매물품의 단가** : 판매 품목 및 단가를 게시 부착하여야 하며 취급 물품의 판매단가 책정은 단양군 관내 및 인근 시·군의 가격에 준하여야 한다.

⑤판매물품의 종류 및 가격은 단양관광공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단양관광공사에서 요구할 시 거래명세표(구입원가)를 제시하도록 하며, 품목 및 단가표는 고객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부착하여야 한다.

⑥모든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즉시 교환 및 환불하여야 하며 모든 판매품목은 상표 등록된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식당(매점)에서 취급한 불량제품이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으로 인한 식품 위생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단양관광공사 측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매점 측에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20조(매점운영 등)

①사용인은 매점(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사용인은 물품 도난방지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관리에 철저하여야 하며, 도난 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사용인이 식당(매점)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양관광공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④식당(매점) 운영 시간은 단양관광공사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휴일을 제외한 휴무할 시 사전에 단양관광공사 이사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단양관광공사 사장이 요구하는 시간에는 필히 협조하여야 한다.

⑤단양관광공사 운영상 고객에게 필요한 경우 또는 식당(매점)운영을 중단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매점운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단양관광공사 사장의 지시에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

⑥허가재산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시설 등은 설치를 금지하며 식당(매점)내부시설(각종 편의시설 등)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단양관광공사 사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설치한 시설물은 허가기간 종료 후에 모두 회수·철거하여 허가전 상태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기 설치된 공사 시설물의 훼손 시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⑦고객에게 친절하게 하여야 하며, 불친절한 언어와 비교육적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21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 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공사의 결정에 따른다.

제22조(사용인 시설물 및 물품처분) 사용인이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은 사용인이 구입하고 사용기간 만료 시 사용인이 이를 회수 처분하여야 한다. 단, 공사에서 제공한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연고권의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용허가 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모든 권리주장을 배제한다.